파 주 시

등록번호	기획예산과-2487
등록일자	2022. 2. 14.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구분	비공개(5)
전화번호	031-940-5984

주무관	재정관리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시장	
소민진	성경선	천유경	이종칠	전결 2022. 2. 14. 고광춘	
협조자	예산팀장 김복숙				

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운영기구

구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청소년 특별위원회
인원	80명 이내	11명	지역별 50명 이내	20명 이내	20~30명 이내
구성	일반시민 대상 공모, 추천	예산위원회 임원 등	희망 지역주민, 주민자치회 대행	부시장, 위원장, 국소단장, 분과장	청소년 대상 공모, 추천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2년, 1회 연임가능	-	1년
기능	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위원회 운영 세부 사항 의결	지역주민 의견 수렴	예산 편성안 검토·조정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집약

□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선정사업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
	건 수	예산액		
2019년	129	6,564	1,043,740	0.6%
2020년	173	10,113	1,211,756	0.8%
2021년	185	9,638	1,221,012	0.8%
2022년	176	9,967	1,494,450	0.7%

□ 2021년 운영성과

○ ’22년 주민참여예산 **176건, 100억원 반영**(작년 규모 대비 3.4% 증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접수사업		우선순위 선정사업		반영사업	
	건 수	사 업 비	건 수	사 업 비	건 수	사 업 비
합 계	422	33,210	272	15,636	**176**	**9,967**
시 단위 추진사업	133	25,468	74	9,913	**51**	**6,398**
지역단위 특색사업	31	731	24	574	**13**	**282**
소규모 읍면동 사업	256	6,951	172	5,089	**110**	**3,227**
청소년 제안사업	2	60	2	60	**2**	**60**

- ’20년 세분화한 편성유형을 개선하여 **‘지역단위 특색사업’ 확대**
  * **(’21)** 4건, 95백만원 → **(’22)** 13건, 282백만원 편성
- 청소년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13건 중 2건 구체화하여 분과위원회 심의 진행 결과 **‘청소년 제안사업’ 2건, 60백만원 반영**

○ **온라인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과 연계)

- 대상별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실효성 및 수요자 만족도 증대

○ 위원회 숙의 지원을 위해 사업대상지 **현장 영상자료 활용*** **다변화**

- 기존 현장 영상자료를 단순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면회의를 진행하여 의견교환, 질의응답 등을 병행함으로써 입체적 평가 가능
  * 코로나19로 사업 현장 방문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년 처음 도입

○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 개정 내용에 맞춰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II 2022년도 운영방향

□ 주민참여예산제주민자치회 연계

'21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후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기능 및 예산을 연계**하고자 함

① **지역회의 신규 구성** 또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대행** 선택 가능

- **(대행기능)** 지역 내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의견 제출
- **(기대효과)**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조례개정으로 '22년부터 주민자치회의 지역회의 기능 대행이 가능해졌으나 **연계 초기단계이므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운영 필요**

② 주민자치회에 **'지역단위 특색사업'** 유형 **한도액 중 일부 배정**

- **(세부내용)** '지역단위 특색사업' 유형의 한도액 10억원 중 5.1억원은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자치계획형**으로 별도 배정
- **(기대효과)**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주민 예산수요 반영 및 지역 문제 해결력 증대, 주민참여예산 사업 다변화

<기 존>

주 체		한도액	
순위결정	실 행	총 액	비 고
市 위원회	읍면동	10억	건별 3천

<변 경>

주 체			한도액	
순위결정	실 행	예산과목	총 액	비 고
주민자치회 (자치계획형)	**주민자치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5.1억**	**읍면동별 3천**
	읍면동	**시설비 등**		
市 위원회 (일반)	읍면동		4.9억	건별 3천

* 지방보조금 사업은 해당 주민자치회가 순위를 결정하는 자치계획형 유형 중 주민자치회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에 한하며, 타 유형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반영 불가

Ⅲ 세부 추진계획

1 운영기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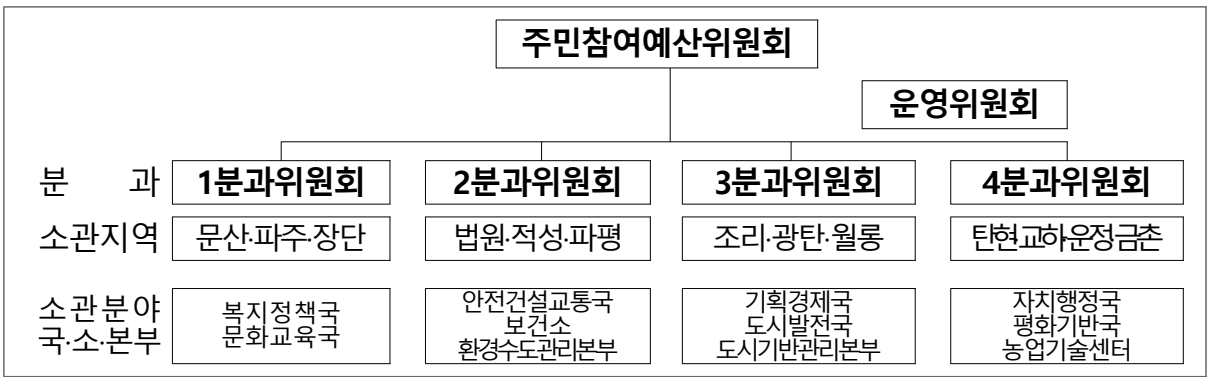
○ 인원/임기 : 80명 이내/2년, 1회 연임 가능 (조례 제12조, 14조)

○ 기　　능

-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결정
- 주민참여예산 운영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등

○ **분과위원회** : 4개 분과로 구성

- 분과 구성 시 본인 지역 外 분과로 배치하여 불공정 심사 방지 상피제
- 소관지역 외 소관분야를 지정하여 市 단위 사업 심의 가능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2년 3월 중 모집 예정(구성계획 별도수립)

□ 운영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 필요시 분과간사 포함 (조례 제20조)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 특정 안건 발생, 특정 부문 또는 계층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육성·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 인원/임기 : 읍면동별 50명 이내/2년, 1회 연임 가능 (조례 제23조)

○ 기　　능

- 예산과정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사업 발굴·제안
- 지역 내 주민제안사업 내용 검토 및 사업 우선순위 의견 제출

> '21년 조례 개정에 따라 희망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 기능 대행 가능**
> (근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2조제1항)

○ 운영 방식

- 최초 회의는 읍·면·동장이 소집·개최
- 지역회의 호선으로 의장, 부의장 선출 (간사 주무팀장)
- 지역회의 신규 구성 시 주민자치회 위원 포함
- 회의 개최 일정, 운영 횟수 등은 위원회 자율 운영 3회 이상 개최 권고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 구　　성 : 부시장(회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부회장), 국·소·본부장, 분과위원장 등 20명 이내 (조례 제27조)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안 검토 및 조정

□ 청소년특별위원회

○ 인원/임기 : 20~30명 내외/1년

○ 구　　성 : 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이 겸임**

○ 기　　능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청소년 예산 관련 의견수렴 활동
- 청소년 관련 정책제안 및 청소년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제

2 주민참여예산 편성유형

가 편성 개요

<table>
<tr><th>구분</th><th>시 단위 추진사업</th><th>지역단위 특색사업</th><th>소규모 읍·면·동 사업</th></tr>
<tr><td>대상 사업</td><td>·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 市 단위 검토·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td><td>· 주민 생활환경 개선
· 마을문화 형성 사업
· 주민자치활동, 공동체 활성화, 마을특화사업 등</td><td>· 읍·면·동 단위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td></tr>
<tr><td>제외 사업</td><td colspan="3">계속사업,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소모성·행사성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업, 동일구간 금액별 분리 편성 사업,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td></tr>
<tr><td>공모 규모*</td><td>-
✔ 사업별 3억 이내</td><td>10억원 이내
✔ [일 반] 4.9억, 사업별 3천 이내
✔ [자치계획] 5.1억, 지역별 3천 이내</td><td>40억원 이내
✔ 읍·면 3억, 동 1억 이내
✔ 사업별 5천 이내</td></tr>
<tr><td>주요 절차</td><td>공모
▼
읍면동 검토
▼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우선순위 선정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
예산협의회 확정</td><td>[일 반]
공모
▼
읍면동 검토
▼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우선순위 선정
▼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
예산협의회 확정

[자치계획형]
사업 발굴
▼
부서 검토
▼
우선순위 조정
▼
마을계획 수립
▼
주민총회</td><td>공모
▼
읍면동 검토
▼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우선순위 결정
▼
사업 관련 필요서류 확인
▼
예산협의회 확정</td></tr>
<tr><td>실행 주체</td><td>실과소</td><td>(일 반) 읍·면·동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또는 읍·면·동</td><td>해당 읍·면·동</td></tr>
</table>

* 공모 규모는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편성유형 세부 내용

1 시 단위 추진사업

○ 개　　요

- (대상사업) 여러 읍면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시 단위 검토·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

※ 제외사업
계속사업,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소모성·행사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업, 동일 구간 금액별 분리 편성사업,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 소규모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 (실행주체) 실과소
- (한 도 액) 없음
- (제안자격) 파주시민,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
- (신청방법)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서 제출[별지1,1-1]
  - 온라인 **상시접수** : 파주시 홈페이지 (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 신청-글쓰기)
    ↳ 공모기간 외 접수 건은 다음연도(2024년) 주민제안사업으로 검토
  - 우편(팩스) 및 방문 접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획예산과

○ 주요 추진일정(안)

사업 공모	⇒	읍면동 및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사업 심의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2~5월		6~7월		8월		9~10월		10월 말

2 지역단위 특색사업 [일반, 자치계획형]

○ 개　　요

- (대상사업) 주민 생활환경 개선, 마을문화 형성 사업, 지역별 특색사업 등 소규모 사업, 주민자치 활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 **제외사업**
계속사업,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소모성·행사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업,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 기반시설 등 설치·유지보수 사업

- (실행주체)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
- (한 도 액) 10억원(일반+자치계획형), 사업별 3천만원 이하
- (제안자격) 파주시민,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
- (신청방법)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서 제출[별지1,1-1]
  · 온라인 **상시접수** :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 신청-글쓰기)
  ↳ 공모기간 외 접수 건은 다음연도(2024년) 주민제안사업으로 검토
  · 우편(팩스) 및 방문 접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획예산과

○ 주요 추진일정(안)

사업 공모	⇒	읍면동 및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사업 심의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2~5월		6~7월		8월		9~10월		10월 말

○ 주민자치회 연계 : **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

- (제 안 자) 주민자치회
- (한 도 액) 지역단위 특색사업 10억원 중 **5.1억원**, 읍면동별 **3천만원** 이하
- (실행주체)
  · 주민자치회(민간경상사업보조) : 주민자치 활동, 공동체 활성화, 마을특화사업
  · 해당 읍·면·동(시설비 등) : 기타 주민편익 증진 사업
- (주요 추진일정)

사업 발굴	⇒	부서 검토	⇒	마을계획수립	⇒	주민총회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

※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직접 실행하는 사업에 한하며, 예산협의회 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자치행정과 취합제출)

3 소규모 읍·면·동 사업

○ 개　　요

– (대상사업)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제외**사업
계속사업, 투자심사 및 개별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사업, 소모성·행사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사업, 동일 구간 금액별 분리 편성사업,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지역단위 특색사업[자치계획형]-주민자치회 실행사업 제외)

– (실행주체) 해당 읍·면·동

– (한 도 액) 40억원(읍·면 3억원, 동 1억원), 사업별 5천만원 이하

* **예산편성 후 사업내용 변경, 미추진, 집행잔액 임의 지출 등 발생 시** 해당 지역 다음연도 '소규모 읍면동 사업' **한도액 삭감(발생 건별 5천만원)**

– (제안자격) 파주시민,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

– (신청방법)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제안서 제출[별지1,1-1]

· 온라인 **상시접수** : 파주시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 신청–글쓰기)
↳ 공모기간 외 접수 건은 다음연도(2024년) 주민제안사업으로 검토

· 우편(팩스) 및 방문 접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획예산과

○ 주요 추진일정(안)

사업 공모	⇒	읍면동 및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사업 심의	⇒	필요서류* 취합·제출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2~5월		6~7월		8월		9~10월		10월 말

* 구비서류(토지사용 승낙서 등) 미비,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등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또는 예산협의회에서 제외 가능

다 편성유형별 일정(안)

	시 단위 추진사업	지역단위 특색사업	소규모 읍·면·동 사업
2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2022.2.21.(월)~5.15.(일)		
3월			
4월			
5월	접수사업 유형 분류		
6월	읍면동 구체화	읍면동 구체화 및 검토	읍면동 구체화 및 검토
7월	소관부서 검토	관련부서 검토	관련부서 검토
8월	지역회의 우선순위 선정	지역회의 우선순위 선정	지역회의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차 총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9월	분과위원회 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사업 관련 필요서류 기획예산과 제출 (토지사용승낙서 등)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총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동 가능)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전체 편성안 검토·조정		
11월			
12월	최종 편성사업 확정, 市 홈페이지 공개		

3 2022년 편성사업 관리

□ **(추진 중)** 변경, 미추진 사유 발생 시 절차 준수

○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업이므로 부득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필요

○ 제안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 변경만 가능하며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사업비 증액 등 불가능 (집행 잔액의 목적 외 사용 불가)

○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불가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변경 방지 및 일몰 사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도움

○ 사업변경 요청 시 절차 (별지 서식 3, 4)

변경 사유 발생	⇒	지역회의 개최	⇒	회의결과 공문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읍·면·동		읍·면·동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읍·면·동

○ 추진 불가 시 절차 (별지 서식 3, 4)

불가 사유 발생	⇒	지역회의 개최	⇒	회의결과* 공문제출	⇒	운영위원회 보고
		읍·면·동		읍·면·동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 **(추진결과)** 사업 전·후 사진, 완료 여부, 미추진 시 사유 등 공개

○ (공개시기) 2023. 1월 중

○ (공개위치) 파주시 홈페이지 (소통참여-정책참여-주민참여예산)

4 주민참여 예산학교

○ 교육대상 :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일반시민, 청소년 등

○ 교육일정 : 온라인 교육 상시 운영 중(~2022. 8월까지)

○ 수강방법 : www.gseek.kr(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 접속→ 회원가입 후 '검색하기' 클릭→ '파주시' 검색→ 희망 강의 수강

* 비회원도 수강 가능하지만 **회원가입 후 수강 완료해야 수료증 발급 가능**

강의명	시 간	내 용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1시간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념 - 참여예산제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 반영사업 사례
우리 동네의 의제는 무엇일까?	40분	-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기법 - 지역자원의 조사와 활용 - 의제선정을 위한 숙의 방법

Ⅳ 홍보계획

기 간	홍보내용	홍보방법
2~5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기간 집중 홍보	-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배부 (아파트, 경로당·마을회관 등) -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홍보 - 시청 홈페이지(팝업창 등) - 언론매체 홍보(보도자료) - 기타매체 홍보(페이스북, 블로그, 현수막 게재 등)
3월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등 홍보	-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홍보 - 시청 홈페이지(팝업창 등) - 언론매체 홍보(보도자료)
2~7월	주민참여 예산학교 홍보	

V 행정사항

○ (읍·면·동)

구 분	내 용	기 간
홍보 및 제안사업 **접수**	- 다중이용시설 홍보물 배부 (아파트 단지, 경로당·마을회관 등) -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홍보 - 읍·면·동 민원실에 사업제안서[별지1] 비치	2022. 2~5월
지역회의	- 지역회의 운영 (신규 구성 또는 주민자치회 대행 여부 제출) - 지역 제안사업 우선순위 의견[별지2, 2-1, 2-2, 2-3, 3] 제출 - 지역 편성사업 변경 또는 일몰 시 지역회의 개최하여 의견 제출 (공문)	2022. 2~11월 (세부 일정 공문 발송)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각 읍면동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명 추천	별도공지

– 지역별 사업대상지 중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 지목과 상관없이 사유지의 경우 승낙서 반드시 필요

– 분과위원회 심의 시 읍면동 사업담당자의 사업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회 숙의 활동 지원

○ (사업검토 및 추진 담당부서)

– 기한 내 신속·정확한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협조

* **제안자 의견청취 및 현장 확인**,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 중복사업 확인 등

–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및 사업 설명, 관련 자료 제공

–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적극 추진 및 추진 현황 자료 협조

※ 확정사업 편성기준

실과소	읍·면·동	주민자치회
◆ 시 단위 추진사업 ◆ 소규모 동(洞)사업 ◆ CCTV, 가로등 설치 등	◆ 지역단위 특색사업 - 일반, 자치계획형 ◆ 소규모 읍·면·동 사업	◆ 지역단위 특색사업 - 자치계획형

→ 재배정 시 반드시 **재배정 받을 부서**와 협의 후 진행

–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의 변경, 일몰 시 관련 절차 준수
(별지 3, 4 작성 후 공문)

– 편성예산 **변경**을 위하여 예산팀 협의 시 **'재정관리팀장' 협조 필수**

붙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관련 서식 각1부. 끝.